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5,353,000	36,460,590
일반회계	1,070,576,000	32,117,280
특별회계	144,777,000	4,343,310
공기업특별회계	123,812,000	3,714,360
상수도사업	67,867,000	2,036,010
하수도사업	55,945,000	1,678,350
기타특별회계	20,965,000	628,95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781,000	113,4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32,000	75,96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05,000	27,150
주택사업	356,000	10,680
주차장설치사업	604,000	18,12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65,000	10,95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06,000	30,180
의료보호기금사업	2,030,000	60,900
공공급식지원센터	9,386,000	281,5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4,045,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황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